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칠레 로비법의 문제점

최선욱

1. 들어가며

10년간의 긴 논의 끝에 2014년 3월 3일 마침내 칠레에서 로비(Lobby)법이 제정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칠레 로비법의 핵심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관계자 모두 로비스트 또는, 특정이익대행인과의 회의, 접견,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여행 및 선물을 반드시 공개기록(registro público)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칠레 로비법은 공직자와 이익단체와의 관계에 최초로 투명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공포된 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 시달려 왔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칠레 로비법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동 법이 가진 결점과 한계점을 실례를 통해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2. 칠레 로비법 제정 과정

칠레 로비법은 1994년 당시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Ruiz-Tagle) 대통령이 설치한 공공윤리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Ética Pública)의 최종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록 동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로비’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직자의 공정

성·독립성’ 부분에서 공무원이 이익단체의 로비나 사익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주요 문단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슬리는 정치부패 현상은 바로 공익이 사익에 종속되는 것이다.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는 국가 발전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규제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Comisión Nacional de Ética Pública 1996, 208)

이와 같이 위원회는 칠레에서 최초로 공직자와 이익단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2002년 말과 2003년 초, 당시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코이마스(Coimas) 사건’, ‘게이트(GATE) 사건’과 같이 고위공무원 및 당시 집권 중도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국회의원들의 대형 부패 스캔들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라고스 대통령의 초기 대응은 부패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와 행정부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었으나(Navia 2004, 2), 국민과 야당연합의 반발과 신랄한 비판으로 대통령 해야까지 거론되었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2003년 1월 라고스 대통령은 당시 야당연합의 수장격인 파블로 룡게이라 독립민주연합(UDI) 대표를 만나 극적으로 ‘국가 현대화·투명성·성장촉진을 위한 행정부·입법부 합의’를 도출했다. 총 49개에 달하는 법안 중, ‘공적결정에 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로비법’도 명시되어 있었고, 2003년 11월 마침내 로비 규제 법안(Boletín 3407-07)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5년간의 긴 논의 끝에 2008년 5월 법안이 의회 합동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8월 통과된 정보공개법의 탄력을 받은 미첼 바첼레트 정부는 동 법안이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로비스트 즉, 특정이익대행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28일 바첼레트 정부는 로비법 규제 대상자 확대, 로비스트 의무 등록, 로비스트 공개기록부 관리 및 공개 등이 포함된 2차 로비 규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BCN 2014, 9-10). 비록 2009년 7월 28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하원의 의결



로비법을 공포하는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 (출처: <http://2010-2014.gob.cl>)

은 4년간 연기되었다.

2012년 5월 당시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하원 의결에 앞서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수정사항 중 핵심은 바로 법안의 초점을 로비스트에서 공직자로 이동한 것이었다(BCN 2014, 262). 이런 관점에서 로비스트 의무 등록, 로비스트 공개기록부 관리 등 로비스트와 관련된 의무·금지 조항을 대폭 폐지하는 대신, 공직자의 공개기록부 관리 의무를 강화하였다(BCN 2014, 262).

분명 본 수정법안을 기존 법안의 심각한 후퇴로 간주한 중도좌파 야당연합에서 로비스트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집권 중도우파 연합의 강력한 지지로 수정법안이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하였고, 마침내 2014년 3월 3일 피네라 대통령 퇴임 8일 전에 로비법(법률 20,730호)이 공포되었다.

3. 칠레 로비법 주요 내용

로비법(법률 20,730호) 시행을 감독하는 주요 기관은 칠레투명성위원회(Consejo para la Transparencia)이며, ‘Info Lobby’(www.infolobby.cl)를 통해 공직자의 공개기록부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바첼레트 2기 정부는 공무원의 공개기록부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되었거나 혹은 자발적

으로 등록한 로비스트 명부를 로비법 플랫폼(www.leylobby.gob.cl)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로비법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로비법이 규제하는 로비스트와 특정이익대행인은 모두 행위자에 해당하며,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하나, 전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후자는 받지 않는다(제2조). 또한, 로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이익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특정인 및 특정 국내외 단체의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모두를 가리킨다(제2조).

제12조는 행위자(로비스트 및 특정이익대행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다루고 있다. 모든 행위자는 로비와 관련된 정보 즉,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이익 집단, 금전적 이익 수령 여부 등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피행위자와 관계 부처에 알릴 의무가 있다(제12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회의 및 접견 전에 작성한다(제12조).

만약 피행위자가 지정된 기간 내 공개기록부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원에서 8~20일 내로 시정 및 기록을 명령할 수 있다(제15조). 동시에 열흘 내로 감사원 의결을 통해 관련 기관장에게 10~30 UTM¹⁾ 즉, 한화 약 78만5천원~235만3천원의 벌금 부과를 제안할 수 있다(제15조). 만약 피행위자가 ‘용납될 수 없는 누락’ 혹은 ‘의도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개기록부에 포함시킨다면 20~50 UTM 즉, 한화 약 156만9천원~392만2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제16조). 반면, 행위자가 정보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10~50 UTM 즉, 한화 약 78만5천원~392만2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제8조).

로비를 받는 공직자 즉,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관계자는 모두 ‘피행위자’로 통칭한다(제3, 4조). 로비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은 (1) 법안, 법 및 행정 명령의 발의, 수정, 폐지, 거부, (2) 국회 협의, 성명 및 결정의 발의, 수속, 승인, 수정, 폐지, 거부, (3) 피행위자에 의해 실현되는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의 입안, 시행, 평가에 해당한다(제5조).

제7~11조는 피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공개기록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에서 세금 계산 시 사용되는 가상 화폐단위로 월별로 측정된다. 2017년 5월 기준, 1UTM = 46,740페소 = 약 70달러에 해당한다.

모든 피행위자는 반드시 로비스트 및 특정이익대행인과의 회의 및 접견,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여행과 선물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나, 공개 시 국가 이익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회의, 접견 및 여행에 대한 기록 의무는 제외된다(제8조). 모든 공공기관은 별도의 공개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제13조),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한 달에 한 번 관련 웹페이지에 공개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제9조).

4. 칠레 로비법의 한계

10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칠레에서 최초로 로비 규제법이 제정되자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쏟아졌다. 비정부기구 ‘지식 시민’(Ciudadano Inteligente) 조사부장 마리아 하라케마다(María Jaraquemada)는 “로비법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공공기관과의 접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Salinas 2014). 반면에 칠레투명성위원회의 마르셀로 드라고는 일간지 『테르세라』의 기고문을 통해 로비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는 “공공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기업이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인데 반해, 현재 로비법은 단순히 “회의 및 접견에 대한 공개기록부법”에 불과하며 피행위자 즉, 공직자에게만 많은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하였다(Drago 2015).

비정부기구 ‘투명한 칠레’(Chile Transparente)의 대표 호세 안토니오 비에라 가요는 로비법의 공개기록부 작성 의무가 국내 영토에만 한정되므로 만약 외국에서 로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Canales 2015). 나아가, 비정부기구 ‘대중 기금’(Fundación Multitudes)의 대표 파울리나 이바라는 현행 로비법이 ‘악법’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공직자가 대통령전용기에서 기업가의 로비에 노출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고 맹비난하였다(Canales 2015).

특히, 피행위자에 포함된 외교관의 반발은 매우 거세었다. 외교부 장



2014년 11월 개최된 '투명성이 신뢰다' 세미나에서 칠레 로비법에 대해 발표 중인 시메나 린콘 대통령비서실장 (출처:<http://www.modernizacion.gob.cl>)

관 에랄도 무뇨스(Heraldo Muñoz)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은 국익을 위해 수많은 관계자를 만나 회의하고 및 접견하는데, 참석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였다(Muñoz 2015). 또한, 많은 외교관은 비엔나협약과 로비법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Cádiz y Malig 2014). 이로 인해, 로비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약 10%의 외교관만이 공개기록 의무를 준수할 뿐이었다(Muñoz 2015).

이처럼 로비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비판, 반발 및 우려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2015~2016년 동안 두 가지 로비 스캔들이 칠레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1) 어업법 개정 로비 스캔들

2016년 7월 10일 칠레국영방송(TVN)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특별보도’는 이반 푸엔테스 하원의원(무소속)이 2012년~2016년까지 대형어업회사 협회(FIPES: Federación de Industrias Pesqueras del Sur Austral)로부터 꾸준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반 푸엔테스는 2012~2013년

당시 영세 어민 조합(CORFAPA: Consejo Regional de los Fiordos y Archipiélagos de Aysén) 대표였으며, 대형어업회사를 상대로 영세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전국적인 지지와 명성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푸엔테스는 2013년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였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영세 어민의 우상이자 아이콘으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이런 푸엔테스가 비밀리에 대형어업회사로부터 여행경비뿐만 아니라 하원의원 선거자금까지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푸엔테스의 위선적인 행적이 드러나자, 2013년 왜 대형어업회사에게 유리하게 어업법이 개정되었는지(법률 20,657호) 의문이 풀리게 되었다. 특히, 영세 어민에게 할당된 연간 어획 허가량 100% 판매를 가능하게 한 개정 어업법 제55조N호(기존 어업법은 연간 어획 허가량의 50%만 판매 가능)는 푸엔테스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 덕분에 ‘낚시꾼’(pescadores de orilla, 실제 어업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간 어획 허가량만 판매하는 어민)과 대형어업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칠레 남부 아이센 지역의 대형어업회사 프리수르(Friosur)는 싼 값에 어획 허가량을 구입(대구의 일종인 메를루사 1킬로 당 650페소에 구입)하여 엄청난 시세 차액(1킬로 당 1,200페소에 판매)을 남길 수 있었다(Ramírez et al. 2016).

TVN 고발 방송이 나간 지 이틀 만에 푸엔테스는 카메라 앞에 섰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비록 대형어업회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본인의 발언 중 어떠한 것도 영세 어민에게 반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형어업회사로부터의 지원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업법이 통과된 후”라며 얼버무렸고, 선거 비용은 파트리시오 위커 상원의원으로부터만 지원을 받았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끝으로 어업법 개정회의에 참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CNNChile 2016).

물론, 푸엔테스에 대한 로비는 로비법이 공포되기 전인 2012~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과연 당시에 현행 로비법이 있었더라면 영세 어민 조합대표가 대형어업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역설적이고 위선적인 로비를 막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거의 ‘No’에 가깝다. 먼저, 현행 로비법은 행위



기자회견 중 눈물로 호소하는 이반 푸엔테스 하원의원 (출처: <http://www.radiovillafrancia.cl>)

자(로비스트, 특정이익대행인)가 아닌 피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당시 푸엔테스는 영세어민조합 대표였으므로 행위자에 해당되기에 공개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반 푸엔테스가 누구와 밀담을 갖고 누구 돈으로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다.

둘째, 이번 사태와 같이 푸엔테스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벌금)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즉, 행위자인 푸엔테스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 한화 약 78만5천원~392만2천원 정도에 불과한데, 대형어업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받는 이익(선거자금 지원 등)은 막대하다. 또한, 벌금 외에 로비활동 금지, 공직자 접견 금지, 기소 등의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처벌은 현행 로비법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2). 주차장법 로비 스캔들

2014년 11월 18일 기독교민주당(PDC) 하원의원 8명이 합심하여 쇼핑몰, 마켓, 공항, 병원 등의 주차장 이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BCN 2017, 3). 첫 번째 관문인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처음 30분은 무료
2. 무료 30분 이후 2시간은 주차장 이용자가 쇼핑몰, 백화점 등의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료
3. 무료 시간이 지나면 각 주차장 운영방침에 따라 분 단위로 요금 부과
4. 혜택은 주차장마다 하루에 한 번만 가능
5. 공립병원 주차장은 무조건 무료

많은 칠레 시민은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비싼 주차장 요금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였기에 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상원에서 그 누구도(로비스트는 제외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상원에서 주차장 이용 법안은 개악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로 다음 세 명을 빈번하게 거론한다. 먼저, 파트리시오 멜레로 우파 독립민주연합(UDI) 상원의원이다. 이 상원의원의 동생 호세 마누엘 멜레로는 쇼핑몰채권위원회(CCHCC) 회장으로 주요 고객은 칠레 최대 리테일회사인 센코수드(Cencosud), 파라베야(Falabella), 파르케 아라우코(Parque Arauco S.A.) 등이다. 당연히 하원에서 통과된 주차장 무료이용 법안이 달갑지 않은 쇼핑몰 관계자들은 호세 마누엘 멜레로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는 형인 멜레로 상원의원을 통해 법안 수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에우헤니오 투마 민주당(PPD) 상원의원이다. 그는 상원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주차장 법안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원안 발의를 주도했던 마르셀로 차베스 하원의원은 CNNChile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에서 통과한 주차장 무료이용 법안에 대해 “에우헤니오 투마가 주도한



신(新)주차장법에 항의하는 한 소비자 단체. 현수막에 ‘주차장법 = 고리대금 & 강도’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출처: <http://www.biobiochile.cl>)

상원경제위원회는 매우 혹독(intenso)했다”고 회상하였다(CNNChile 2017). 또한, 오랜 기간 활동했던 한 로비스트는 “투마 상원의원은 Retail 쪽 사람이며, 본인의 지역 내 쇼핑몰 및 공공기관 임대를 포함한 부동산 이익에 매우 민감하다”며 평하기도 하였다(Carmona y Saleh 2017).

마지막으로, 엑스텐드(Extend) 기업의 정치·법률관계 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대형 로비스트 펠리페 델 솔라르(Felipe del Solar)가 있다. 칠레투명성위원회가 운영 중인 ‘Info Lobby(www.infolobby.cl)’에 의하면, 2015년 5월 8일(원안이 하원을 통과한 시점)부터 2016년 11월 17일(주차장 법이 공포된 시점)까지 그는 APOCE A.G.(칠레 주차장 운영회사 협회)를 대표하여 하원의원, 장관, 공무원과 총 53차례 회의 및 접견을 실시하였다.

멜레로 상원의원, 투마 상원의원 그리고 대형 로비스트 펠리페 델 솔라르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로비로 인해, 원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주차장법(20,967호)이 2016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주차장 무료이용은 응급상황에서의 병원 주차장 이용을 제외(제15B조)하고는 전적으로 주차장 운영회사의 자유재량이며(제15A조), 주차장 요금은 입장 후부터 곧바로 분당 혹은 ‘구간(예를 들어, 10분)’별로 부과할 수 있다(제15A

조). 비록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운영회사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지만(제15A조) 그 책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원안과 완전히 다른) 주차장 운영회사의 자유재량이 극대화된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차장 요금이 최대 76%까지 치솟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Molina 2017), 몇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은 더욱 비싸진 주차장 요금에 치를 떨며 항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어업법 개정 로비 스캔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로비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처럼 공익에 반하고 철저하게 주차장 운영회사와 쇼핑몰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 몇몇 유력인사의 로비로 인해 큰 차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을까?

첫째, 로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개기록부를 통해서는 정확한 로비의 내용을 알 수 없다. ‘Info Lobby(www.infolobby.cl)’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직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회의 및 접견을 가졌는지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회의 목적 및 주제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2~3줄 정도의 매우 짧은 언급만 있을 뿐이다(아래 사진 참조). 그러므로 로비스트가 어떤 식으로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Cita Agenda Lobby

Audiencia
FECHA: 09/05/2017-11:30
LUGAR: Congreso Santiago
ESTADO: Celebrada
SOLICITANTE: Extend

PERSONAS QUE ASISTIERON A LA AUDIENCIA
 * Felipe Barrueto Avalos
 * Carl Mescham
 * Felipe Del Solar Agüero

PERSONAS, ORGANIZACIONES O ENTIDADES REPRESENTADAS
 * Uber B.V. - Tecnología

MATERIA ESPECIFICA A TRATAR
 Se busca informar acerca de la posición de Uber respecto al proyecto que moderniza la legislación sobre transporte remunerado de pasajeros.
DECISIONES QUE SE ESPERAN TOMAR
 No se espera ninguna decisión en particular sino solo informar acerca de estas materias.

Información General
Identificador: AN01AN0001002
Fecha: 09-05-2017 11:00
Formato: Presencial
Lugar: Cámara de Diputados
Duración: 1 hora, 0 minutos

Asistentes

Nombres completos	Estado	Trabaja para	Representa a
Felipe del Solar Agüero	Legislador	Extensión	C de A Ingeniería Limitada - Ansoo
Carlos de Ansoo	Sector de Intereses		C de A Ingeniería Limitada - Ansoo
Javier Vergara	Sector de Intereses		C de A Ingeniería Limitada - Ansoo

Materias tratadas
 Elaboración, iniciación, modificación, derogación o rechazo de actos administrativos, proyectos de ley y textos y contenido de las decisiones que toman los sujetos pasivos.

Especificación materia tratada
 Apoyar temas relacionados con la oferta de servicios de transporte a tarifa y criterios de control.

공개기록부 작성의 예시(출처: www.infolobby.cl)

둘째, 현행 로비법으로는 공직자 가족 내 로비를 규제하기 어렵다. 대다수 칠레 정치인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대다수 경제인, 기업인, 대기업의 임원 등이었다. 또한,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가족은 여전히 대기업에 연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암묵적인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차장 법 사례와 같이 멜레로 상원의원 가족 내 로비가 있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로비스트 등록 의무가 없는데다 공직자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는 한 공개기록부 작성 의무 부과가 어려운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현행 로비법은 명백히 공익을 해친 로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 앞서 칠레투명성위원회의 마르셀로 드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로비법은 공직자에 대한 공개기록의무법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기록이 부실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에 벌금만 부과될 뿐이다. 주차장법 사례와 같이 로비로 인한 공공정책의 사익 종속에 대한 증거가 매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로비에 휘둘린 국회의원과 로비스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5. 나가며

칠레 로비법에 대한 논의는 공공결정(decisión pública)이 특정 이익집단과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깜깜이’ 정책결정·시행·변동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야심차게 출발하였다. 하지만 10년간의 긴 장고 끝에 행위자(로비스트, 특정이익대행인)에 대한 의무 및 규제보다 피행위자(공직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헛수를 두고 말았다. 물론, 로비스트의 활동을 제약하는 로비법 확정에 대한 기존 로비스트와 이익집단의 반발이 워낙 거세었기에 피네라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비껴받는 수’를 선택하기는 하였지만, 명색이 로비법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스트와 이익집단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속 빈 강정이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서 다룬 두 로비 스캔들로 인해 로비법의 맹점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최근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무 등록, 처벌 강화 등)가 포함된 새로운 로비법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참고문헌

- BCN. (2014). Historia de la Ley N° 20.730.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Santiago.
- BCN. (2017). Historia de la Ley N° 20.967.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Santiago.
- Cádiz, P., y Malig, E. (28 de Noviembre de 2014). Ley de Lobby: Canciller insiste en necesidad de establecer excepción para embajadores. La Tercera. Recuperado de www.latercera.com
- Canales, P. (14 de enero de 2015). Bachelet propone nuevas restricciones a Ley de Lobby. La Segunda. Recuperado de www.lasegunda.com
- Carmona, A., y Saleh, F. (23 de Febrero de 2017). Los lobbistas que torcieron el proyecto de ley de estacionamientos en favor de las empresas. El Mostrador. Recuperado de www.elmostrador.cl
- CNNChile. (12 de Julio de 2016). La extensa conferencia de prensa de Iván Fuentes [Audio]. CNNChile. Recuperado de www.cnnchile.com
- CNNChile. (17 de Febrero de 2017). Marcelo Chávez por ley de estacionamientos: Eugenio Tuma nunca resguardó la gratuidad [Audio]. CNNChile. Recuperado de www.cnnchile.com
- Comisión Nacional de Ética Pública. (1996).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de Ética Pública y la prevención de la corrupción. Revista Ciencia Política, 18(1-2), 202-247.
- Drago, M. (16 de Enero de 2015). La Ley del Lobby. La Tercera. Recuperado de www.latercera.com
- Ley N° 20.285. Sobr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Diario Oficial de la República de Chile, Santiago, 11 de Agosto de 2008.
- Ley N° 20.657. Modificas Ley General de Pesca y Acuicultura en el Ámbito de la sustentabilidad de recursos hidrobiológicos, Acceso a la actividad pesquera industrial y artesanal y Regulaciones para la investigación y fiscalización. Diario Oficial de la República de Chile, Santiago, 1 de Febrero de 2013.

- Ley N° 20.730. Regula el Lobby y las Gestiones que Representen Intereses Particulares Ante las Autoridades y Funcionarios. Diario Oficial de la República de Chile, Santiago, 3 de Marzo de 2014.
- Ley N° 20.967. Regula el Cobro de Servicios de Estacionamiento. Diario Oficial de la República de Chile, Santiago, 4 de Noviembre de 2014.
- Molina, T. (24 de Febrero de 2017). Estacionamientos: Detectan alzas de hasta 76% y Terminal Sur de Santiago registra el mayor precio. El Mercurio. Recuperado de www.elmercurio.com
- Muñoz, A. (1 de Noviembre de 2015). Las Trampas de la Ley del Lobby. La Tercera. Recuperado de www.latercera.com
- Ramírez, P., Carvajal, V., y Alberto, C. (21 de Julio de 2016). El lobby de Iván Fuentes para incluir en la Ley de Pesca una norma que benefició a empresas que lo financiaron. Centro de Investigación Periodística (CIPER). Recuperado de www.ciperchile.cl
- Salinas, C. (22 de Diciembre de 2014). Directora de Ciudadano Inteligente: “La prueba de fuego de ley de lobby es que autoridades publiquen sus reuniones”. La Segunda. Recuperado de www.lasegunda.com